

소송허가결정 공고문

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824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1. 사건,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표시

사 건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313 증권관련집단소송

원 고 : 1. 김태웅

(대표당사자) 의정부시 용현동 291-1 신도브레뉴 105동 2104호

2. 이정수

서울 송파구 잠실6동 장미아파트 15동 1403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

담당변호사 김상원, 김주영, 송성현, 박필서, 김정은, 임진성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, 431호(서초동, G-Five Central Plaza)

피 고 : 지에스건설 주식회사

서울 종로구 종로 3(청진동)

대표이사 허창수, 임병용

2. 총원의 범위

피고가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. 3. 29. 17: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. 4. 10. 17:33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. 4. 10. 17:3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

3. 청구의 취지

피고는 총원에게 금 426,309,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(추후 총원의 구체적인 손해액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임)

4. 청구원인의 요지

- 가. 피고는 전체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각종 해외 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함에 있어,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 한 아랍에미리트(UAE) 르와이스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에 관하여,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2012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.
- 나. 따라서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동 사업보고서를 믿고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5. 제외신고

가. 제외신고

- (1) 제외신고는 구성원이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.
- (2)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접 위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소송의 판결 및 소송상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. 즉,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,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.

나.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

제외신고를 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2016. 8. 9.까지 제외신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제외신고서 양식은 첨부된 문서와 같으며,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(seoul.scourt.go.kr)의 「양식」란의 「민사재판」항목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다. 구성원의 권한

- (1)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(2)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6.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

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, 성공보수는 판결, 화해,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등 중 1심에서 성공 시 20%(부가가치세 별도, 이하 동일), 2심에서 성공 시 25%, 3심에서 성공 시 30%로 약정되었으나,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.

7. 유의사항

- (1)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.
- (2)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는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의 「법원공고」란에 게시되므로,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16. 7. 6.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재판장 판사 전지원